



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제와 돼지이력제 이동신고 연계

이력지원팀

서론

정부3.0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이력법)」의 돼지 이동신고와 「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」를 통합한 「구제역 예방접종·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」가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.

국내에서 가축소유자가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이력법 제5조에 의한 돼지 이동 신고와 행정지시로 시행('15.10.12.)된 「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」에 의한 '돼지 이동계획 및 구제역 임상예찰서' 신고를 해야 했다.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육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「구제역 예방접종·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」를 마련하게 됐다.

본론

제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돼지를 이동하려는 가축소유자는 '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'를 시·군·구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8개 도 본부 및 제주사무소),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각 접수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게 된다. 또한 가축소유자가 직접 이력관리시스템(www.mitrace.go.kr)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. 이 경우에도 이력법에 의한 이동(양도) 신고로 같음된다. 한편, 돼지를 받는 가축 소유자는 기존대로 이력지원실(전화 1577-2633)로 양수신고를 하면 된다.

고시가 시행된 지 약 3주가 지난 8월 초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건수는 7월 기준 2,101건으로 고시 시행 이전(1월~5월 기준)보다 11.1%p 높은 이동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. 또한 신고 방법은 생산농가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신고가 36.9%이며, 종축개량협회를 통한 종돈의 이동신고 40.9%, 방역지원본부 12.2%, 시·군·구 10.0%로 나타나고 있다.

결론

돼지고기이력제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연계·통합한 '구제역 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' 시행으로 돼지 이동정보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관리는 물론 구제역 등 질병 확산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.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소유자의 자발적인 신고이므로 농장 간 돼지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축소유자의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㉠